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상위법 제정(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)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관련상위법(시행규칙, 도조례)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현행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불필요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 개정코자 함.

4. 主要骨子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로 명문화(안 별표2)
-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조문을 개정(안 제3조, 제7조)하고,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포 삭제(안 별표2).

- 상위관련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된 병적증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를 삭제(안 별표1의 <증명>란 2 및 6중 ⑬항)
-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요율표의 중복 부분을 삭제(안 별표1의 <증명>란의 1, 인감에 관한 증명중 ②항과 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>란 1의 ③항과 중복)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제128조(수수료)와 같은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써,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명문화하고 관련 개별상위법 규정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와 중복 등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